

문서번호 : 리테일마케팅 제 2026년 - 028호

시행일자 : 2026-04-01

수신 : 수신처 참고

참조 : 수익증권 관련 담당 부서장

제목 : 소규모펀드 공시 (2026년 4월)

가. 귀 행(사)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나. "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3조 제3항 제4호 및 제5호"에 근거한 소규모펀드 수시공시 사항이 발생하여 "금융투자회사  
 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지 제8호 및 제11호 서식에 따라 소규모펀드 현황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  
 오니 "자본시장법 제89조 제2항"에 따른 방법으로 수시공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음 -

**1. 소규모펀드 수시공시 발생일: 2026년 4월 (대상기간 : 2026.03.01 ~ 2026.03.31)**

**2. 소규모펀드 공시사항**

추가 모집이 가능한 공모집합투자기구가 아래 각호의 하나의 해당되는 경우,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 
 자본시장법 제192조 1항에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금융감독원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및  
 발생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른 공시사항 (소규모펀드 이행실적 및 계획 등)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3항의 제4호 및 제5호  
 제4호(소규모펀드 1년 공시) 설정(설립)이후 1년이 되는날 원본액 50억 미만인 경우  
 제5호(소규모펀드 1개월 공시) 설정(설립)이후 1년이 경과하고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 50억 미만인 경우

**3. 공시대상 소규모펀드: ※ 첨부파일 참조**

**4. 소규모펀드 공시방법: 자본시장법 제89조 제2항 참조**

※ 다만, 금융투자업규정 제4-67조의 2(소규모 집합투자기구의 수시공시 방법)에 따라 소규모펀드 공시사항이 발생하는  
 월말의 다음 영업일에 이를 일괄하여 공시할 수 있음.

※ 수신처: BNK투자증권, DB증권, iM증권, KB증권, NH투자증권, SK증권, 경남은행, 광주은행, 교보생명, 교보증권, 국민은행, 기업  
 은행, 다올투자증권, 대신증권, 메리츠증권, 미래에셋생명, 미래에셋증권, 부산은행, 삼성생명, 삼성증권, 신영증권, 신한은행, 아이  
 비케이투자증권, 우리은행, 우리투자증권, 유안타증권, 유진투자증권, 전북은행, 키움증권, 하나은행, 하나증권, 한국투자증권, 한화  
 생명, 한화투자증권, 현대차증권. 끝.

**키움투자자산운용주식회사**  
**대표이사 김 기 현**

첨부파일 2개 (78.8KB)
소규모펀드공시_20260401 공시.pdf (62.8KB)
판매사별 펀드분류 26.04.01.xlsx (16.0KB)

구분	펀드명	판매사명	발생(정리)일자	정리방법	비고
소규모펀드(1개월) 공시	키움장기코어밸류증권자투자신탁제1호[주식]	하나은행	2026-03-18	-	-
소규모펀드 해소	키움장기코어밸류증권자투자신탁제1호[주식]	하나은행	2026-03-30	기타(추가판매)	-